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9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0.

발 의 자:정춘생·이해민·차규근

강경숙 · 김준형 · 서왕진

황운하 · 신장식 · 김선민

김재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,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실질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,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지방의회로의 파견, 전입희망공무원 등의 방법으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경향이 큼.

이에 따라 지방의회 역량 강화라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, 또한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파견을 온 공무원은 다시 돌아갈 본청을 감시, 견제하는 업무를 하기에는 큰 어 려움을 겪고 있기도 함.

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취지를 살리고,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고, 임기제

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1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지방공무원으로"를 "지방공무원으로"를 "지방공무원으로"로 원으로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"로한다.

- ② 제1항에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 연구
- 2.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
- 3. 그 밖에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에 필요한 업무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책지원 전문인력 임용에 관한 적용례)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	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		
력) ① (생 략)	력) ①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따른 정책지원 전문		
	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		
	<u>수행한다.</u>		
	1.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		
	정책 활동 관련 조사 · 연구		
	2.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		
	정책 활동 관련 정보 수집ㆍ		
	<u>제공</u>		
	3. 그 밖에 지방의회의원의 자		
	치입법 및 정책 활동에 필요		
	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		
	하는 업무		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<u>지방</u>	③		
<u>공무원으로</u> 보하며, 직급·직무	공무원으로서 「지방공무원		
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	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		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 공무원으로</u>		